

국내석유류제품최고 판매가격고시중개정

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
고시(통상산업부고시 제1995-95호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5년 11월 30일
통상산업부장관

제1조 제1항 제2호 가격연동 방법중 2) 유종별 세전 제조장반출가격, 유종별 기준 국내공급비용, 국제 원유바스켓가격에 의한 복합원가 및 국제제품가격에 의한 유종별 기준가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유종별 세포함제조장반출가격중 “석유사업기금”을 “석유판매부과금”으로 하며, 주2) 및 주3)의 “석유사업기금”을 “석유판매부과금”으로 하고, 주3)의 “석유사업

· 비축등 국내공급비용
= { (1,021,296 + 1,004,590 × 관세율)
(P+F) + 1.003814 × 석유수입부과금 + 1.003814 × Q
× 환율 + 116.944389P × (직전 3개월간 환차) ÷ (직
전 3개월간 일수) + 국내수송·저유·비축등 국내공
급비용

2) 유종별 세전 제조장반출가격
= (유종별 기준국제가격(P) + 운임(F) + 보험료 + 관세
+ 석유수입부과금 + 부대비 + 수입금융비 × 품질보정치
(Q)) × 환율 + 환차손익 + 수송중손실 + 국내수송·저유

법 제17조 3”을 “석유사업법 제17조 2”로 하며,
“수입금”을 “부과금(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)”으로 하
고, 주7)의 “석유사업기금”을 “석유수입부과금(이하
이 고시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○ 유종별 기준 국내공급비용

유종	기준국내공급비용
무연휘발유	7,103
등유	6,069
저유황경유(0.2W%)	3,942
경유	3,994
저유황병커씨유(1.0W%)	1,146
저유황병커씨유(1.6W%)	891
병커씨유	1,061
평균	3,943

국제원유바스켓가격에 의한 복합원가

$$= [\{ 1.065118 \times \text{국제원유바스켓가격} + 0.615949 \times \text{석유수입부과금} + (1.08362 \times \text{국제원유바스켓가격} + 0.743051) \times \text{관세율} + 0.748082 \} \times \text{환율} + 3,262 + 120.875700 \times \text{국제원유바스켓가격} \times (\text{직전 3개월간 환차}) \div (\text{직전 3개월간 일수})] \times 23,849 \div 18,653$$

국제제품가격에 의한 유종별 기준가격

$$= (\text{유종별 기준국제가격}(P) + \text{운임}(F) + \text{보험료} + \text{관세} + \text{석유수입부과금} + \text{부대비} + \text{수입금융비} + \text{품질보정치}(Q) \times \text{환율} + \text{환차손익} + \text{수송중손실} + \text{유종별 기준 국내공급비용}) \times \text{환율} + 116.944389P \times (\text{직전 3개월간 환차}) \div (\text{직전 3개월간 일수}) + \text{유종별 기준 국내공급비용}$$

제2조 석유류제품 판매수수료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/ℓ)

유종별/유종단계별	대리점	주유소 및 판매소
무연휘발유	24.00	38.00
등유	16.00	22.00
저유황경유(0.2W%)	15.00	21.00
경유	15.00	21.00
저유황경질중유(1.0W%)	10.00	
저유황경질중유(1.6W%)	10.00	
경질중유	10.00	
저유황중유(1.0W%)	10.50	
저유황중유(1.6W%)	10.50	
중유	10.50	
저유황병커씨유(1.0W%)	11.50	
저유황병커씨유(1.6W%)	11.50	
병커씨유	10.50	

부 칙

1. 이 고시는 1995. 12. 1. 0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의 저유황경유(0.2W%)는 1996. 1. 1. 0시부터 저유황경유(0.1W%)로 변경한다.